



San Gabriel / Pomona Regional Center

Program of San Gabriel/Pomona Valleys Developmental Services, Inc.
75 Rancho Camino Drive e, Pomona, California 91766
(909) 620-7722 www.sgprc.org

커뮤니티 및 직원 내부고발자 정책

2022년 10월 26일 업데이트됨

목적:

이 정책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샌 가브리엘/포모나 리저널센터(SG/PRC) 직원, 이사회 구성원, 서비스 제공자, 계약자, 서비스를 받는 발달장애고객 및 그 가족, 기타 파트너 및 친구에게 인지된 부적절한 리저널센터 활동이나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자/계약자의 활동을 보고하기 위한 지침 및 구조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SG/PRC는 타당한 의심, 우려 또는 불법적, 비윤리적 또는 부적절한 활동에 대한 증거에 대한 보고가 성실성을 근거로 이뤄진 것이라면 환영합니다. 이 맥락에서 성실성이란, 불만이 SG/PRC 직원 또는 서비스 제공자/계약자 관련 문제를 시정하거나 나쁜 관행을 제거할 목적으로 제기되었고 해당 불만이 사실에 대한 타당한 의심이나 인지를 근거로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G/PRC의 내부고발자 정책은 SG/PRC 직원, 이사회 구성원 또는 서비스 제공자/계약자가 저지른 인지된 부적절한 행동을 성실하게 보고한 것에 맞서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보복으로부터 내부고발자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들을 보호합니다. 단순히 불만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습니다. SG/PRC 직원, 서비스 제공자/계약자 및 이사회 구성원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그리고 개인적으로 최고 수준의 윤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책:

리저널센터 또는 서비스 제공자/계약자 내부고발자 불만에 대한 정의:

리저널센터 또는 서비스 제공자/계약자 고발자 불만은 "부적절한 리저널센터 또는 서비스 제공자/계약자 활동"에 대한 보고로 정의됩니다.

- "부적절한 리저널센터 활동"은 리저널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리저널센터 또는 리저널센터의 직원, 임원 또는 이사의 활동 외에 주법 또는 연방법이나 규정을 비롯해 계약 조항을 위반하거나, 사기 또는 재정적 불법 행위에 해당되거나, 정부 재산의 오용에 해당되거나, 또는 중대한 위법 행위, 무능 또는 비효율로 간주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자/계약자 활동"은 서비스 제공자/계약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계약자의 직원, 임원 또는 이사회 구성원이 발달장애서비스부(DDS) 자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주법 또는 연방법이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 조항을 위반하거나, 사기 또는 재정적 불법 행위에 해당되거나, 정부 재산의 오용에 해당되거나, 또는 중대한 위법 행위, 무능력 또는 비효율로 간주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1. 불만 제기 제출

SG/PRC에는 서비스를 받는 발달장애고객과 그 가족, 서비스 제공자, 기관, 지역 사회 구성원 및 SG/PRC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불만 및 이의 제기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비자 권리 불만 사항(복지 및 기관법 섹션 4731 불만 사항), 조기 시작 불만 제기, 적법 절차 요청 및 중재 회의 요청 발달장애인지원법(Lanterman Act), 공청회 요청, 17편 불만 제기, 시민 의견 및 불만 제기 및 내부 고발자 불만 제기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dds.ca.gov/general/appeals-complaints-comments/> 참조). 이 각각의 불만 및 이의 제기 프로세스에는 해결을 위한 별도의 고유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정책에 기술된 프로세스는 앞서 설명된 샌 가브리엘/포모나 리저널센터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계약업체 고발자 불만 사항에만 관련됩니다.

모든 불만 사항에는 부적절한 활동에 대한 명확하고 간결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하고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측이 아닌 **사실**이어야 합니다. 서류는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당사자가 고소장에서 부적절하게 행동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근무하는 리저널센터 또는 서비스 제공자/계약자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이나 기타 정보(증인 또는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리저널센터와 이사회에 조사할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은 익명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제공된 정보가 불충분하고 리저널센터 또는

위원회가 불만 사항을 제기한 개인 또는 그룹에 연락할 수단이 없는 경우 혐의 조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내부고발자 정책은 발달장애인지원법이나 조기 개입 서비스법에 규정된 항소 절차가 있거나 개별 프로그램 계획(IPP) 또는 개별화된 가족 서비스 계획(IFSP)에 포함되어야 하는 서비스 및 지원의 성격, 범위 또는 수량에 관한 분쟁, 규정에 규정된 항소 절차가 있는 요율 또는 감사 항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분쟁은 발달장애인지원법, 조기 개입 서비스법 또는 적용 가능한 규정에 의해 설정된 항소 절차를 통해 해결됩니다.

불만 사항은 SG/PRC 직원 또는 담당자에게 다음 연락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Jesse Weller 대표(Executive Director) - San Gabriel/Pomona Regional Center
75 Rancho Camino Drive, Pomona, CA 91766 (909) 710-8187 - jweller@sgprc.org
2. Erika Gomez 이사회 비서, (909) 710-8194 - egomez@sgprc.org
3. Lucina Galarza 커뮤니티 서비스 디렉터, (909) 710-8829 - lgalarza@sgprc.org
4. Raquel Sandoval 인사부 디렉터, (909) 710-8200- rsandoval@sgprc.org
5. Salvador Gonzalez 커뮤니티 지원 및 준법부 디렉터, (909) 710-8814 - sgonzalez@sgprc.org
6. Jaime Anabalón 서비스 감찰 매니저, (909) 710-8832 - janabalon@sgprc.org

불만 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발달장애인부(DDS)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서비스부 (916) 651-6309, 팩스 (916) 654-3641; 1600 9th Street, Room 340, MS3-9, Sacramento, CA 95814.

불만 사항은 이사회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은 SG/PRC 이사회 담당자인 Erika Gomez에게 75 Rancho Camino Drive, Pomona, CA 91766, (909) 710-8814 이나 이메일 EGomez@sgprc.org로 연락하여, SG/PRC 이사회 의장에게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 보복 금지

법률이나 규정 위반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동이나 조건을 성실하게 보고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괴롭힘, 보복 또는 불리한 결과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성실하게 위반 사항을 보고한 당사자에게 보복하는 SG/PRC 직원은 즉시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부고발자 정책은 서비스를 받는 개인과 그 가족, 서비스 제공자, 기관, 커뮤니티 구성원 및 SG/PRC 직원이 기관 외부에서 해결을 모색하기 전에 SG/PRC 내에서 심각한문제를 보고하도록 권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계약자, 서비스를 받는 개인 또는 가족 구성원은 성실하게 내부고발자 불만을 제기한 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도 보복을 받지 않습니다.

3. 조사 과정

리저널센터 또는 서비스 제공자/계약자 고발자 불만 사항은 전화, 팩스, 이메일, 서신 또는 직접 방문하여 앞서 열거된 담당자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불만 접수자는 불만 제기자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얻어 검토 및 해결을 위해 적절한 사람이나 부서에 불만을 회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이 구두 형식인 경우 불만 접수자는 불만 제기자의 이름(제공된 경우), 연락처 정보, 불만 사항의 성격, 누구 또는 무엇에 관한 불만 사항인지, 가능한 증인의 이름, 불만이 접수된 날짜와 시간을 포함해 불만 제기자가 제공한 정보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 접수자의 이름은 담당자 또는 부서에 회부할 때 기록되어야 합니다.

모든 보고는 즉시 조사가 이뤄지고 내부고발자 불만 조사에서 타당한 경우 적절한 시정 조치가 취해집니다. 불만 접수자는 불만이 익명이 아닌 경우 불만 제기자에게 결론과 취해진 모든 조치를 통지합니다. 이 정보는 서비스를 받는 개인, 그 가족 또는 직원의 기밀 유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됩니다. 이 조사 절차는 보복에 대한 불만 제기에도 적용됩니다.

4. 성실하게 행동하기

위반 또는 의심되는 위반과 관련하여 내부 고발자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누구든지 성실하게 행동해야 하고, 공개된 정보가 법률 또는 규정 위반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동이나

조건의 발견을 뒷받침한다고 믿을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고 악의적으로 작성되었거나 고의로 거짓된 것으로 밝혀진 모든 주장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5. 기밀 유지

SG/PRC는 고소인이 기밀 유지를 요청하는 경우 내부고발자 고소인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단, SG/PRC가 법적 책임(서비스를 받는 개인의 건강과 안전 보장 및 리저널센터 계약 준수 보장 포함)으로 인해 기밀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SG/PRC는 신원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특정 정보를 공개해야 할 필요성을 신고자에게 알리려고 시도합니다. 또한, 불만 제기자의 신원은 범죄 수사를 수행하는 적절한 사법 당국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필수 남용 신고 요건은 기밀 유지에 대한 예외로 유효합니다.

6. 내부고발자 정책에 대한 알림

SG/PRC는 내부고발자 정책을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SG/PRC 및 주의 내부고발자 정책의 변경 사항이 발효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리고 이후 매년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 정책의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해 직원, 이사회 구성원, 서비스를 받는 개인 및 가족, 서비스 제공자 커뮤니티에 알립니다.

1. 직원은 정책이 첨부된 초기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직원은 연간 성과 평가 정책 검토 진술서에 서명할 때 정책의 존재를 상기하게 됩니다.
2. 이사회 구성원은 이사회 패킷에서 정책 사본을 받게 됩니다.
3. 서비스를 받는 개인과 그 가족은 연간 서비스 비용 명세서에서 정책에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
4. 서비스 제공자 커뮤니티는 지불 프로세스에서 정책에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간 알림을 받게 됩니다.

초판: 2010년 10월 25일

개정: 2010년 11월 9일

2020년 5월 12일

개정 위원회 승인: 2020년 5월 27일

새 주소로 업데이트됨: 2014년 2월 24일

SGPRC 직원의 올바른 직함 업데이트됨: 2020년 7월 16일

SGPRC 직원 및 전화번호 업데이트됨 2022년 10월 26일